

수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신규 대조표

2025. 12. 19. 개정

현행	개정안
제26조【통신기기 관리】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. 단, 등교 후 교실 입실 시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하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. ②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.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	제26조【통신기기 관리】.....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. 단, 등교 후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하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.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본 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해당 교육 활동에 근거하여 교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.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허가한 경우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34조【훈육】 ① “훈육”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, 제지, 분리, 소지 물품 조사,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.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,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.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,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.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,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	제34조【훈육】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⑦ (현행과 같음)

1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
2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(실외
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)
3.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
4.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

[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
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,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	교실 내 분리 좌석(교탁이나 교실 앞 주변 등) 교실 내 지정된 위치(교실 뒤 주변 등) ※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	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교사는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가능	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	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나	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거나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① 수업 중 타인의 신체에 위하여 걸만한 물리적 다름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‘가’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(禮堂) 교실 앞문 등 ※분리 시간은 수업 시간 내 일부 교무실, 인월면 등 상담실 등 지정 장소(수업 종료 시 까지)	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분리 좌석을 교실 밖으로 이동 가능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, 인출자 가 학생을 인솔하여 교무실로 이동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 담당자 와 분리장소 확인 후 분리 실시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통제철본 교과서 요약, E학습터 학습 등 과제 부여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	① 3호 ‘나’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, 교실, 인월면 등 지정 장소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정심시간 중 분리될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(20분) 보장	행동통제철본 등 과제 부여
기타	인출자: ①지원인력(행정실무사, 교육청 지원인력 등) ②학교장은 모든 교감 또는 상담교사 등 학생 지도 담당자: ①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②(①번 대상자 부재 시)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(※해당 학년 교사 우선 배정) ※4호 지도에서의 학생 지도 담당자: 위의 학생지도 담당자 외에도 담임교사, 학務담당교사, 학務담당부서장 등 해당				

제54조 【선도의 기준】.....

구분	항	내 용	신도 기준			
			학교 내외 지역	사회 봉사	특별 교과 이수	출석 정지
예절	1	교직원의 혼계에 불응한 학생	○	○	○	○
	2	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초란을 일으키는 행위,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
	3	교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	○	○	○	○
	4	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하나 위암을 가한 행위	○	○	○	○
준법	5	도박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
	6	공문서를 위조·변조한 학생(진단서, 성적표 등)	○	○	○	○
	7	학교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	○	○	○	○
	8	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
	9	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	○	○	○	○
	10	학생 물품 분리 조치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행동하는 학생	○	○	○	○
	11	교내·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	○	○	○	○
	12	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	○	○	○	○
	13	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, 흡입한 학생	○	○	○	○
	14	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○
	15	불온문자(청소년 금지 동영상, 청소년 금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 포함)를 상습적으로 소지, 탐독, 제작,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	○	○	○	○
	16	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(사이버 공간의 카카오톡, 인스타그램 등 포함)	○	○	○	○
	17	교원과 교사의 허락 없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스마트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	○	○		
	18	혼계 조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	○	○	○	○
	19	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반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	○	○	○	○
수업 및 평가	20	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 시험에 관여한 학생	○	○	○	○
	21	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(재시험학 연장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미인정 결석인 경우는 제외)	○	○	○	○
	22	미인정장자, 미인정 조퇴, 미인정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	○	○	○	○
	23	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	○	○	○	○
기타	24	선도 중 중위 각 로를 재차 위반한 학생	○	○	○	○
	25	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	○	○	○	○
	26	교외에서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	○	○	○	○

제58조【재심청구】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	제58조【재심청구】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</u> ④ <u>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</u>
제59조【사안설명】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, 해당 학년 부장,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, 개최 이유,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	제59조【사안설명】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, 심의 결정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
부칙	부칙 제16조【시행일】본 규정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